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

발의년월일 : 2018년 9월 17일

발 의 자 : 김광수, 김제리, 김경영, 송명화

최정순, 이광성, 유정희, 김태수

김기덕, 김정환, 장상기, 이광호

김용연 의원(13명)

1. 제안 이유

환경보전 시책 협력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서울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환경보전 시책에 공공·민간의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환경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함.

2. 주요 골자

가. 모든 사회 주체들이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도록 함(안 제1조)

- 나. 「지방자치법」제22조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가 규제조치를 할 수 있는 행위를 법령위반 행위 등으로 명시함(안 제22조)
- 다. 시 또는 자치구로부터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주체들이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환경보전 시책에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라. 대기 항목 측정방법 삭제 및 PM-2.5 농도기준 추가(안 별표 1)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 조치 :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 · 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추진함으로써"를 "추진하고 모든 사회 주체들이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함으로써"로 한다.

제22조 중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우려가 있는 법령 위반 행위"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환경보전 시책에 대한 협력) 시 또는 자치구로부터 수탁사업, 보조금 등의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공공기관, 사업자, 단체, 시민 등은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환경보전 시책에 책임과 역할을 인식 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환경기준(제14조 관련)

1. 대기

T
기 준
연간 평균치 0.01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2ppm 이하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연간 평균치 50 $\mu g/m^{s}$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μg/m³ 이하
연간 평균치 15 <i>µg/m³</i> 이하
24시간 평균치 35μg/m³ 이하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연간 평균치 0.5 $\mu g/m^{\scriptscriptstyle 3}$ 이하
연간 평균치 5μg/m³ 이하

비고:

-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μm 이하인 입자를 말한다.
- 3.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m 이하인 입자를 말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환	제1조(목적)
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서울특별시·자	
치구·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서울특별	
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	
을 규정하여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	
적으로 <u>추진함으로써</u> 쾌적한 생활환경과	추진하고 모든 사회 주체들이 환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	경보전 시책에 협력함으로써
다.	
제22조(규제조치) 시는 환경오염의 원	제22조(규제조치)
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	
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우려가 있는 법령 위반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해위
<u>〈신 설〉</u>	제24조의2(환경보전 시책에 대한 협력)
	시 또는 자치구로부터 수탁사업, 보조금
	등의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
	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공공기관, 사업자,
	단체, 시민 등은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보전 시책에 책임과 역할을 인식
	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별표 1】환경기준

1. 대기

1. 네기 항 목	기 준	측 정 방 법	
아황산가스 (SO ₂)	연간 평균치 0.01ppm 이하	자외선형광법	
	24시간 평균치 0.04ppm 이하	(Pulse U.V Fluorescence	
	1시간 평균치 0.12ppm 이하	Method)	
일산화탄소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Dispersive	
(CO)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Infrared Method)	
이산화질소 (NO ₂)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htod)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미세먼지 (PM-10)	연간 평균치 50μg/㎡ 이하	배타선흡수법 · (β-Ray Absorption	
	24시간 평균치 100μg/㎡ 이하	Method)	
오존 (O ₃)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자외선광도법 - (U.V Photometric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Method)	
납 (Pb)	연간 평균치 0.5μg/㎡ 이하	원자흡광광도법 (Atomic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벤젠	연간 평균치 5μg/㎡ 이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Gas Chromatography)	

비고 :

- 1. 1시간, 8시간, 24시간의 평균치는 연간 3회 이상 그 기준을 초과하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 여서는 아니된다.
- 2.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μm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별표 1】환경기준

1. 대기

1. 41/1	T
항 목	기 준
아황산가스 (SO ₂)	연간 평균치 0.01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2ppm 이하
일산화탄소 (CO)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이산화질소 (NO ₂)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미세먼지 (PM-10)	연간 평균치 50μg/㎡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μg/㎡ 이하
미세먼지 (PM-2.5)	연간 평균치 15μg/㎡ 이하
	24시간 평균치 35μg/㎡ 이하
오존 (O ₃)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납 (Pb)	연간 평균치 0.5μg/㎡ 이하
벤젠	연간 평균치 5μg/㎡ 이하

비고 :

- 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μm 이하인 입자를 말한다. 3.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μm 이하인 입자를 말한다.